



제262회 임시회
2007. 7. 12 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건설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7년 6월 29일
- 회부일자 : 2007년 7월 일

3. 제안이유
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이 개정되어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과 「습지보전법」으로 나뉘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「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」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“생태계보전지역”을 “생태·경관보전지역”으로 “관리야생동식물”을 “보호야생동식물”로 용어 변경 등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
-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조항 신설(안 제11조, 제12조)
-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시설 설치·운영 근거조항 신설(안 제15조)
-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근거조항 신설(안 제16조)
- 생태·경관보전지역, 야생동·식물보호구역, 습지보전지역 등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근거조항 신설(안 제25조)

5. 검토의견

「자연환경보전법」이 개정되어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과 「습지보전법」으로 나뉘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「충청북도 자연환경

보전 조례」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
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- 안 제4조 제1항 3호중에서
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” 또는
“생태계의 표본지역”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고

- 안 제5조 제2호중에서
“생태경관 보전지역 도민의 삶의질과 향상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”
는 무엇을 의미함인지 조문표기가 불명확 하므로 명료화 시킬 필요
가 있다 판단되며,

- 안제 32조에서
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
조문 삽입 등 구체적인 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부칙(안) 제2항의 경과조치 내용이
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행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
급입법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조문을 명
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